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안 제6조)

마.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지원(안 제9조)

바.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안 제10조)

사. 포상 등(안 제14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2016년 12월 16일 시행)는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원과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4일 제정됨
- 반면,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1일부로 시행 중임
- 현행 조례는 그동안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법률과 조례적용 및 해석의 혼동이 있고, 오랜시간 동안 정비되지 않아 정책추진의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 조항으로,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모성권 보장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전문개정함
-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
 - 특히,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쓰이지 않아 삭제하였음

-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에서 책무와 적극적 조치 등으로 나누어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를 통합하여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함
- 안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하 “계획등” 이라 함)의 수립·시행에 관한 것으로,
 - 법 제5조에는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과 ‘여성어업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통합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어 정책시행의 오류를 바로잡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함)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
 - 또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획등의 수립·시행 시 협조요청 기관에 ‘전문가 등’ 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충돌이 없도록 조문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함
- 안 제5조는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만큼, 신속한 시행규칙안의 마련이 필요함
- 안 제6조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함)에 관한 사항으로,
 - 법 제7조 개정에 따라 기존 자문회의에서 심의회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하고, 심의회에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시키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5조와 마찬가지로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사업별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함
- 안 제9조는 법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규정의 신설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 조 제목을 우리말로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로 수정하고, 여성농어업인 참여와 양성평등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단체 및 관련 시설 지원,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위법과의 내용 일치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안 제14조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날과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 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므로, 집행기관의 시행규칙 제정, 심의회 구성 준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정하였음

○ 그 밖에 충청북도 등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입법례

연번	조례(시행규칙)명	시행일
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1. 2.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3. 4. 11.
2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22. 7. 7.
3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2022. 4. 15.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2022. 7. 15.
4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3. 3.
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1.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2021. 11. 23.
7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9. 30.
8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21. 3. 18.
9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20. 9. 30.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2020. 5. 15.
11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30.
12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4. 1.
13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2016. 12. 16.

※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이중 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도는 경기, 경남, 전북, 경북 등 4개 시도이며,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시행 중인 시도는 경기, 전북 2개뿐임

※ 또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어서, 충북도 내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연계성 강화와 혼동방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함
- (법적합성) 또한, 계획등의 수립, 실태조사, 심의회,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건강관리 지원과 그 밖에 모성권 보장, 양성평등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타당성)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복지향상 등 각종 지원사업의 명확화 및 구체화를 통해 여성농어업인 권익신장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내용이 타당함
- 다만,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계획수립(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